

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3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9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행정안전부 「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참고 조례안」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 정비
-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, 운영세칙 근거 규정 마련 등을 통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 도모

□ 주요내용

-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 · 운영 기준 신설(안 제7조)
- 지역자율방재단원 소집수당 지급 규정 신설(안 제9조)
- 임무 수행을 위한 장비 · 물품 구입비 지원 근거 신설(안 제10조)
-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세칙 근거 규정 신설(안 제19조)

□ 개정조례안 : 붙임1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2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붙임3

□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2. 8. 10. ~ 2022. 8. 22. (12일간)

□ 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붙임4
- 방침결정문 : 붙임5

〈 불임 1 〉

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, 제61조, 제62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명칭은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(이하 “방재단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3조(설치) 방재단은 안산시에 설치한다.

제4조(구성) ① 방재단은 단장 1인, 부단장 1인,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.

③ 방재단의 부단장(이하 “부단장”이라 한다)과 방재단의 간사(이하 “간사”라 한다)는 제5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.

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·단체·기업체·기관·학교·종교단체·동호회 등으로 한다. 다만, 방재업무상

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.

-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한다.
- ⑦ 동지역자율방재단 대표(이하 “대표” 라 한다)는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.
- ⑧ 대표는 해당 동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 단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
제5조(임원 및 직무 등)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.

- ② 단장은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- ③ 부단장은 단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,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, 회의기록,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.
- ④ 대표는 동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.
- ⑤ 단장, 부단장, 간사,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⑥ 단장, 부단장, 간사, 대표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해임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.

- 1. 사망,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
 - 2. 단장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
 - 3. 단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
 - 4.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
-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.

1.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
2. 단원이 안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. 다만,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3.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
5.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

제7조(지역자율방재협의회) ① 시장은 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·자문·의결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한다.

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협의회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단장, 부단장, 간사, 대표,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원
2. 방재 전문가, 그 밖에 방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단장이 시장에게 추천한 사람

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.

⑥ 협의회에서는 재난의 예방, 대비, 대응, 복구 등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 시 시장에게 인력, 장비,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⑦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·의결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.

⑧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⑨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임무) 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, 대비, 대응, 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,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②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방재단의 인적·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
2.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·정비
3. 재난 예방·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
4. 재난관련 교육·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·훈련 실시
5. 비상시 유관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, 주민대피 유도, 차량 통제 등
6.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,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
7. 재난지역의 응급복구(전기, 통신, 상·하수도 등)
8. 감염병 방재활동 및 공중보건관리 등
9. 인력, 장비, 물품 등 수요 파악
10.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,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, 차량통제 활동전개 등

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범위·시기·규모 등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.

제9조(소집)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소집 방법은 전화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.

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

당하지 않는다. 다만,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소집한 임원과 단원이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영 제6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.

⑥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,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거나 재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임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⑦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10조(활동 및 지원 등)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활동이 있을 시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“단원 활동현황 총괄표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안산시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. 다만,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, 인원, 조건, 임무 등에 대해서는 「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④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「안산시 재난안전

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⑤ 단장은 매년 8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은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.

⑦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, 숙박비, 식비, 일비,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
2. 단원의 임무 수행 중 사망, 부상,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. 다만,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
3. 제복, 모자,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편복비

4. 방재단 임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실에 상시 근무하는 간사의 근무수당

5.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장비 및 물품 구입비

6.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⑧ 제7항제1호의 운임, 숙박비, 식비, 일비의 지급기준은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을 준용한다.

⑨ 제7항제4호의 간사 근무수당의 지원기준은 「근로기준법」 및 「안산시 생활임금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1조(금지행위)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1.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

2.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

3.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

4.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

제12조(출입증 발급)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할 때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.

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.

제13조(교육) ① 단원의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,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한다. 다만,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(민간기관 포함)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세부 사항은 해당년도 「민방위교육 추진지침」에 따른다.

제14조(훈련)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5조(중앙지원단 자문 등)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·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.

제16조(감독)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·감독을 하여야 한다.

제17조(재해보상)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

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.

1. 요양보상: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

2. 장해보상: 해당 단원의 장애정도가 확정된 날. 다만, 장애정도를 판정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의 신체 장해가 발생한 날로 한다.

3.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: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

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「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」 제3조에 따른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,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.

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「민법」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, 유족 중 동순위자(同順位者)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.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,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다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: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

2.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: 법정대리인이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

⑤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.

제18조(준용 등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민법」 등을 따른다.

제19조(운영세칙) 방재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2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시민안전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시민안전과장 노 현우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자연재난팀장 이상배
	담당자 성명·전화	권순섭 (행정 2163)

[별지 제1호서식]

임명장

주소
성명

귀하를 안산시 지역자율방재 단장으로
임명합니다.

년 월 일

안산시장

[별지 제2호서식]

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<개인>

등록번호 :

성명	○○○(성별)	연령	혈액형	
주소				일반전화
				휴대전화
자격증 또는 기능	운전가능여부 (면허종류)			
재난 현장경험	※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) ○○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, 이재민 구호, 차량통제, 인명구조,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			
희망 활동내용	※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			
[특이사항] ※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				

상기 본인은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가입희망자 ○ ○ ○(인)

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

[별지 제2-1호서식]

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<단체>

등록번호 :

단체명	대표자		○ ○ ○ (휴대전화)	
주소				대표전화
담당자	○ ○ ○ (휴대전화)	부서명		
인원	남 ○○명	여 ○○명	총인원	○○명
장비	장비명(규격) ○○ 대	장비명(규격) ○○ 대	장비명(규격) ○○ 대	장비명(규격) ○○ 대
지원가능	남 ○○ 명	장비(규격) ○○대	장비(규격) ○○대	장비(규격) ○○대
	여 ○○ 명			
전문분야	※ 단체의 성격 정리 예) 인명구조, 이재민 구호, 장비지원, 차량지원.. 등 구체적으로 정리,			
활동희망분야	※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			

[특이사항]

([별지 제2-2호 서식]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)

상기 본 단체는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
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대표 ○ ○ ○ (인)

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

[별지 제2-2호서식]

[가입희망 회원명부]

[단체명 :]

[별지 제3호서식]

활동확인서

성명	(인)	등록번호	* 서식2의 등록번호
활동내용	사유	※ ○○태풍, ○○지역 집중호우, ○○지역 설해 등	
	방법	※ 인력,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	
	시간	○○○○년○○월○○일 부터 ~○○○○년○○월○○일 까지 (○○시간)	
	장소	※ ○○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	
	내용	※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) ○○지역 사전예찰 00시간, ○○마을 차량통제, 00시간 ○○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	
[건의사항] ※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			
확인자 직위	○○동 대표	성명	(인)

본인은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

※ 확인자는 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

[별지 제4호서식]

단원 활동 현황 총괄 표

※ 등록번호

- 개인의 경우는 [별지 제2호서식]의 등록번호를 기재
 - 단체의 경우는 [별지 제2-1호서식]의 등록번호와 [별지 제2-2호서식]의 업번을 붙여서 기재 [(예) 10-1]

* 횟수,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

※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엑셀 등으로 관리

* [별지 제3호서식]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

*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

[별지 제5호서식]

○○년도 연중 활동계획서

[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]

월별	주 요 내 용	비고
1	○ ○	
2	○ ○	
3	○ ○	
4	○ ○	
5	○ ○	
6	○ ○	
7	○ ○	
8	○ ○	
9	○ ○	
10	○ ○	
11	○ ○	
12	○ ○	

※ 세부사항은 별도 불임 가능

* 자치단체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

[별지 제6호서식]

출 입 증

출 입 증	
① 	③ NO. 000 <u>한국형 (BH+)형</u> 성 명 : <u>○ ○ ○</u> 생년월일 : <u>○ ○ ○ ()</u> 소 속 <u>④</u> 이 증을 <u>소지한</u> 사람에게 재난발생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. ※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②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원증 ← 5.5cm →	⑤ <u>년 월 일</u> ⑥ <u>연 선 지 정 (연)</u> ⑦ <u>회원 배경에 시군구 생활(취향) 삽입</u>

[별지 제7호서식]

요양 [] , 장해 [] , 장제 [] , 유족 [] 보상청구서

※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※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0일
사고자	소속	전화번호
	주소	
	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
청구인	주소	전화번호
	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
	사고자와관계	
사고경위 및 요양	사고(사망)일시	
	사고(사망)장소	
	사고경위	1. 화재 [] 2. 구조 [] 3. 구급 [] 4. 기타 []
	요양(진단)병원	요양(진단)부위
	요양(진단)결과	요양기간
청구금액	요양보상	장해보상
	장제보상	유족보상
	청구금액	

「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17조에 의거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: (서명 또는 인)

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.

년 월 일

단장 : (서명 또는 인)

안산시장 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(재활용품)]

제출서류	1. 요양보상(①, ③, ④, ⑦, ⑧), 2. 장해보상(①, ②, ③, ④, ⑦, ⑧) 3. 장제보상(③, ④, ⑤, ⑥, ⑦, ⑧), 4. 유족보상(③, ④, ⑤, ⑦, ⑧) ① 의사진단서, 진료영수증, 진료내역서 각 1부. ② 장해증명서류 1부.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.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(사고발생 보고서, 목격자 진술서 등) 1부. ⑤ 사망진단서(사망증명 서류) 1부.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. ⑦ 통장사본 1부.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(필요시) 1부.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요양·장해보상(주민등록등본,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) 장제·유족보상(가족관계증명서· 인감증명서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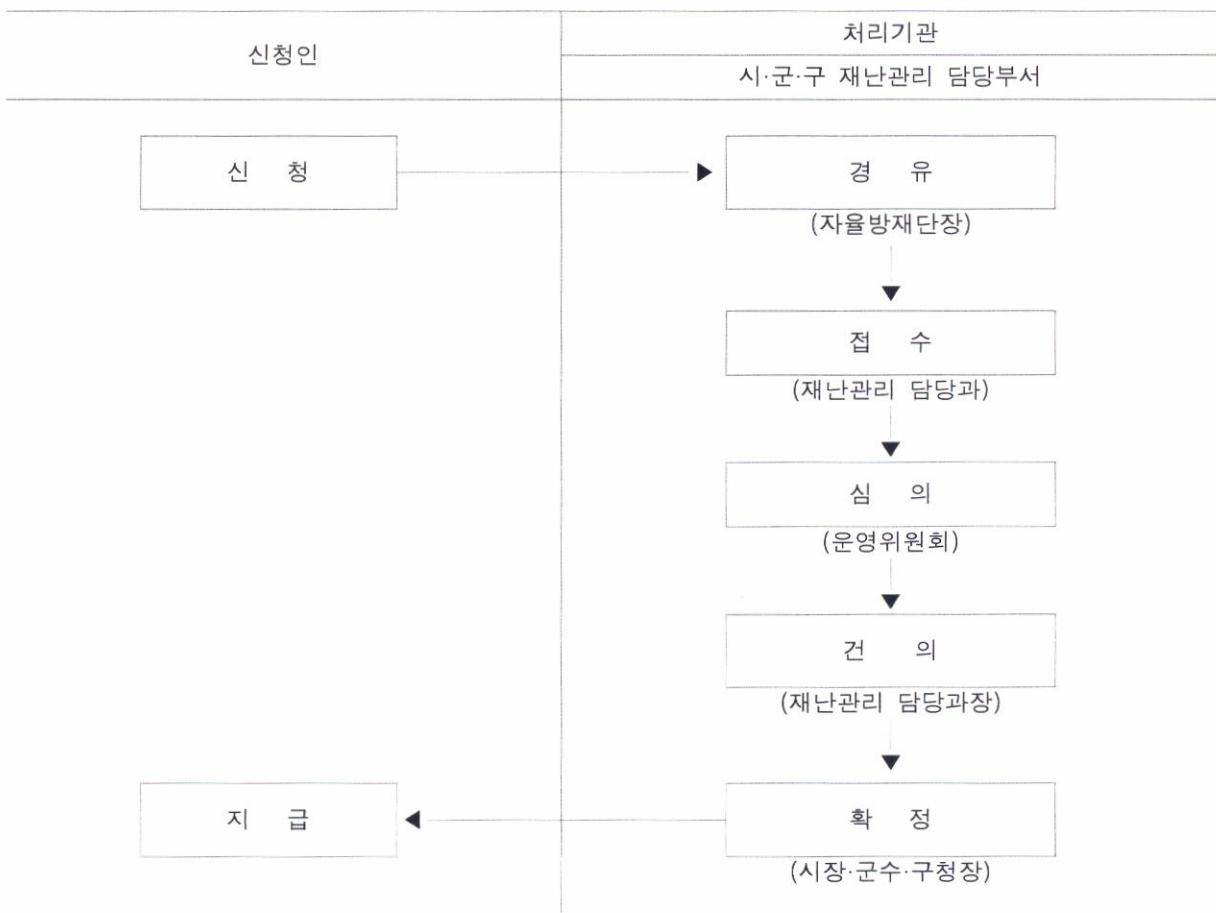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

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9-39호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2. 10. 11.
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회

□ 수정 이유

-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돋도록 하였으며,
- 자율방재단원의 가입자격을 정비하여 자율방재단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고, 아울러 각종 재난 대응 및 복구에 있어 안산시민 스스로가 참여한다는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단장 임명에 관한 사항 구체화 및 관내 주소를 둔 자만 방재단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 수정 (안 제4조)
-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위원 위촉대상자 수정 (안 제7조)
- 간사 근무수당 지원기준 준용 근거 정비 (안 제10조)

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“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·단체·기업체·기관·학교·종교단체·동회”를 “주소를 둔 개인·단체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”을 “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원 중 안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”으로 한다.

②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(互選)하여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하며, 임명된 단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.

안 제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방재전문가

3. 그 밖에 방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.

안 제10조제9항 중 “「근로기준법」 및 「안산시 생활임금 조례」”를 “「안산시 생활임금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가입된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된 것으로 본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정안
제4조(구성) ① (생 략) ② <u>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.</u> ③ · ④ (생 략) ⑤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·단체·기업체·기관·학교·종교단체·동호회 등으로 한다. 다만, <u>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.</u> ⑥ ~ ⑧ (생 략)	제4조(구성) ① (원안과 같음) ② <u>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(互選)하여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하며, 임명된 단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.</u> ③ · ④ (원안과 같음) ⑤ ----- - 주소를 둔 개인·단체 ----- -----. --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원 중 안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----- -----. -----.
제7조(지역자율방재협의회) ① · ② (생 략)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. 1. (생 략) <u>2. 방재 전문가, 그 밖에 방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단장이 시장에게 추천한 사람</u> <u><신 설></u>	제7조(지역자율방재협의회) ① · ② (원안과 같음) ③ ----- -----. 1. (원안과 같음) <u>2. 방재 전문가</u> <u>3. 그 밖에 방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</u>

원 안	수정안
<p>④ ~ ⑨ (생 략)</p> <p>제10조(활동 및 지원 등) ① ~ ⑧ (생 략)</p> <p>⑨ 제7항제4호의 간사 근무수당의 지원 기준은 「근로기준법」 및 「안산시 생 활임금 조례」를 준용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 style="color: red;">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	<p><u>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</u></p> <p>④ ~ ⑨ (원안과 같음)</p> <p>제10조(활동 및 지원 등) ① ~ ⑧ (원안과 같음)</p> <p>⑨ ----- ----- 「안산시 생활임금 조례」 -----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<u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.</u></p> <p><u>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 전의 조례에 따라 가입된 단원은 이 조 력에 따라 가입된 것으로 본다.</u></p>